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83호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금 등 상품시장의 경우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가격과 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규격화가 미흡하여 거래비용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서 음성시장이 발달하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또한 소비자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가격과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는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가격·시장정보 제공 및 표준화된 거래가 가능한 신뢰성 있는 거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법정 실물상품시장 도입에 대한 관련 법·제도 또한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때문에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실물상품시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 거래소를 도입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 관리와 업자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일반상품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 1) ‘일반상품’이란 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
- 2) ‘일반상품시장’이란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된 일반상품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을 제외하되,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상품은 이 법의 범위에 포함)

나. 제2장 일반상품업자(안 제4조~제30조)

- 1)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실물사업자)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를'상 투자업자 및 경영금융투자업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토록 함

- 2) 일반상품업자로 지정받은 실물사업자는 광고물에 지정, 모범, 우수 등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3) 일반상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및 거래투자권유 준칙 관련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정보교류 차단, 부당권유 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

다. 제3장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안 제31조~제65조)

- 1) 일반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금시장에 대한 일반상품거래소로 의제)
- 2)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일반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 3) 일반상품의 예탁, 보관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

예탁결제원을 금시장에 대한 예탁결제기관으로 의제)

라.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안 제66조~제72조)

- 1) 일반상품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취득정보의 이용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 2)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거래의 경우 일반상품시장 이용의무를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마. 제5장 한국일반상품협회(안 제73조~제77조)

- 1)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거래투자자를 보호하며 일반상품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일반상품협회를 설립

바. 제6장 감독 및 처분(안 제78조~제86조)

- 1)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반상품업자에 대한 감독과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일반상품업자의 부정·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취소,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3) 질서유지, 공익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수량의 거래, 부당가격 형성, 시세조종, 거래제한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거래제

한,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 및 결과 공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제7장 보칙(안 제87조~제91조)

- 1) 정부는 일반상품의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아. 제8장 벌칙(안 제92조~제98조)

- 1) 불공정행위, 일반상품업 위반, 영업규칙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징역(10년 이하~1년 이하) 및 벌금(5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을 차등적으로 부과
- 2)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3. 의견 제출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전화 02-2110-4907, 이메일 dmjeon@mke.go.kr)

일반상품거래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반상품시장에서 가격형성과 매매를 공정하게 하고 거래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며 일반상품의 신뢰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품”이란 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일반상품시장”이란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제외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제31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일반상품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일반상품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상품매매업: 일반상품시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를 행하는 영업

나. 일반상품중개업: 일반상품시장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의 위탁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행하는 영업

4. “일반상품업자”란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아 일반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일반상품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일반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일반상품중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전문거래투자자”란 일반상품거래 및 투자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일반상품거래 및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일반거래투자자”란 전문거래투자자가 아닌 거래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장 일반상품업자

제1절 일반상품업자의 지정 등

제4조(상품업자 외의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일반상품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 한 자는 일반상품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일반상품업자의 지정) ① 일반상품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상품을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실물사업자”라 한다)

가.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나.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

다.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 겸영금융투자업자

② 일반상품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실물사업자

2. 자본시장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 겸영금융투자업자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상품매매업자와 일반상품중개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특정포시를 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상품매매업자와 일반상품중개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변경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모범 또는 우수 사업자의 표시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물사업자는 광고물에 지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않거나 지정이 취소된 실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의 명칭 및 이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정요건의 유지) 일반상품업자는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상품업자의 영업행위규칙

제8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일반상품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반상품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자와 투자자(이하 “거래투자자”라 한다)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명의대여의 금지) 일반상품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

에게 일반상품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보교류의 차단의무) ① 일반상품업자는 그 영위하는 일반상품매매업과 일반상품중개업(일반상품시장 밖에서의 일반상품 매매 및 그의 위탁·중개·주선과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다른 업무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조(거래투자권유의 적합성 고려의무 등) ① 일반상품업자는 거래투자자가 일반거래투자자인지 전문거래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품업자는 일반거래투자자에게 거래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거래투자자의 거래투자목적·재산상황 및 거래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거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거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반상품업자는 일반거래투자자에게 거래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투자자의 거래투자목적·재산상황 및 거래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거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거래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일반거래투자자와 전문거래투자자의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거래투자권유의 설명의무) ① 일반상품업자는 일반거래투자자를 상대로 거래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의 내용, 거래투자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거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품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거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일반상품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거래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일반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① 일반상품업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거래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은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거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일반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거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14조(부당권유의 금지) 일반상품업자는 거래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거래투자자로부터 거래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거래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거래투자권유를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거래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거래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5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일반상품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손실보전약속 등의 금지) 일반상품업자(임직원이 자기의 계산

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거래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거래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거래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거래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7조(시장매매의무) 일반상품중개업자는 거래투자자로부터 일반상품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고 있는 일반상품(이하 “상장일반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의매매의 금지)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일반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투자자로부터 예약 받은 재산으로 일반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거래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거래투자자로부터 일반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일반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거래투자자로부터 일반상품에 대한 거래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거래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일반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절 거래투자권유 준칙 등

제20조(거래투자권유준칙) ① 일반상품업자는 거래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일반상품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거래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품업자는 거래투자권유준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73조에 따른 한국일반상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거래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일반상품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거래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약관의 신고 등) ①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및 제73조에 따른 한국일반상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약관내용 중 거래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3항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일반상품업자가 이미 지식경제부장관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전문거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일반상품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상품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거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거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서류의 교부) 일반상품중개업자는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투자자와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일반상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일반상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2. 해당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개요
3. 수수료, 그 밖의 해당 일반상품거래계약에 관하여 거래투자자가 지불하여야 할 대가에 관한 사항
4. 거래투자자가 행하는 일반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리, 환율, 일반상품시장에 있어서의 시세, 그 밖의 지표의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관한 사항
5. 제4호에 따른 손실의 금액이 거래투자자가 예탁해야 할 위탁증거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반상품업과 관련하여 거래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제23조(매매명세의 통지) 일반상품중개업자는 일반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업의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품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일반상품업자는 법령·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거래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일반상품업자가 제8조, 제10조, 제19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일반상품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거래투자자가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일반상품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상품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조(거래투자광고) ① 일반상품업자가 아닌 자는 일반상품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상장일반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거래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회는 거래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② 협회 및 일반상품업자는 거래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일반상품업자의 명칭, 상장일반상품의 내용, 거래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거래투자광고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거래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일반상품업 폐지 등) ①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일반상품업자가 행한 상장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일반상품업자는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일반상품업자로 본다.

제28조(신용공여) ①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시장에서의 상장일반상품과 관련하여 금전의 용자 또는 상장일반상품의 대여의 방법으로 거래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거래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일반상품중개업자는 거래투자자예탁금(거래투자자로부터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품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거래투자자예탁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투자자예탁금이 거래투자자의 재산이

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거래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거래투자자예탁금을 예치한 일반상품중개업자(이하 “예치일반상품중개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거래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예치일반상품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거래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거래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일반상품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거래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거래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상품중개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일반상품중개업의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일반상품중개업의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일반상품중개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일반상품중개업자로부터 예치 받은 거래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금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
4. 그 밖에 거래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⑦ 제1항에 따라 일반상품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거래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비율, 예치한 거래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거래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거래투자자예탁금의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일반상품의 예탁 등) ① 일반상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상품을 제54조에 따른 예탁결제기관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1.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 그 밖의 거래를 위해 보관하게 되는 거래투자자 소유의 일반상품
2.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일반상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본시장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는 일반상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제54조에 따른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탁하는 일반상품업자 및 신탁업자는 제50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을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

제1절 일반상품거래소

제31조(일반상품거래소의 설립 등) ① 일반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상품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거래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거래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시장감시위원장 1명
4. 이사 12인 이내(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5. 감사 1명

④ 거래소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거래소는 제32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산, 전문 인력, 임직원, 시스템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소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일반상품시장의 개설·운영 등) ① 거래소는 일반상품시장의 개설·운영, 매매, 청산, 회원관리,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

② 거래소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상품시장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매매대상물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수탁에 관한 사항
 3. 일반상품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4. 매매체결에 관한 사항
 5. 청산(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 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사항
 6.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일반상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7. 증거금에 관한 사항
 8. 매매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해외의 일반상품거래소 등과의 연계거래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일반상품의 가격정보 공표에 관한 사항
 11. 위탁수수료 및 그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탁, 매매,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거래소는 일반상품시장업무규정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일반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

호에 “한국상품거래소”, “한국금속거래소”, “한국금거래소”, “한국석유거래소”, “한국에너지거래소”, “일반상품거래소”, “금속거래소”, “일반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던 명칭 또는 상호가 이 법에 따른 거래소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이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일반상품업자 및 일반상품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거래소의 회원의 자격 등) ①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회원은 제5조에 따른 일반상품업자 중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회원관리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④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일반상품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거래종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회원의 시장매매의무) ① 거래소의 회원이 일반상품시장에서 매매되는 일반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품시장에서 매매되는 일반상품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은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공동기금의 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거래증거금 등) ① 거래소의 회원은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을 수 있다.

③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거래증거금 등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이 일반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 ④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에서 거래소가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공동기금에 보전한다.
- ⑤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채무변제순위) ① 거래소의 회원이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입은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은 그 손해를 끼친 회원의 거래증거금 및 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거래소는 회원이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대금 및 품목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거래소는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따른 결제완료 전에 대금 및 품목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회원이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41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① 거래소는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

래에 의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일반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

제42조(시세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상품 시장에서의 일반상품의 일일 매매거래량, 그 가격,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3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2.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3. 제44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중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 시장감시위원회의 운영 및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사항
2.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하는 사항

제45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업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일반상품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일반상품의 종목,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진술요청을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반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반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 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거래관련정보의 교환) 거래소와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일반상품시장과 자본시장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 간에 연계된 거래에 대하여 이

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제48조(보고와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80조제5항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등에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 제82조 및 제91조(제1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긴급사태시의 처분)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품질인증

제50조(일반상품의 품질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일반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통 활성화를 증진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품질인증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50조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5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인증 등급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한 일반상품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 한 일반상품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품질인증 등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일반상품업자 또는 위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그 일반상품의 수거를 명하거나 예탁결제기관에 대하여 일반상품 매매의 신뢰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0조제4항의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3절 일반상품의 예탁, 보관 및 결제

제54조(예탁결제기관의 설립 및 업무)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일반상품의 예탁, 보관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하거나 예탁결제에 관한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상장일반상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예탁결제기관이 수행한다.

③ 예탁결제기관이 아닌 자는 예탁대상일반상품을 예탁 받아 그 일반상품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예탁결제기관은 일반상품의 예탁과 그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상품예탁업무규정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예탁대상 일반상품의 지정·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탁자의 계좌개설 및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 예탁대상 일반상품의 예탁·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 예탁일반상품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말소에 관한 사항
 6. 예탁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탁대상 일반상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예탁결제기관은 일반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상품결제업무규정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상품결제업무규정은 제32조제3항의 일반상품시장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예탁결제기관 결제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제시한에 관한 사항
 4. 일반상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5. 일반상품시장에서의 일반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6. 결제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예탁결제기관은 제4항의 일반상품예탁업무규정과 제5항의 일반상품결제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5조(예탁대상일반상품의 지정) ① 예탁결제기관은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할 수 있는 일반상품(이하 “예탁대상일반상품”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기관이 예탁대상일반상품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예탁결제기관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기관에 일반상품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상품과 거래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일반상품을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일반상품은 미리 거래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예탁결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거래투자자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 받은 일반상품(이하 “예탁일반상품”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기관은 예탁일반상품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⑤ 예탁결제기관은 일반상품의 원활한 예탁과 예탁일반상품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소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거래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거래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일반상품을 예탁결제기관에 다시 예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래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거래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일반상품의 종류 및 수량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일반상품이 거래투자자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일반상품을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일반상품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예탁일반상품의 품질인증)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예탁결제기관에 일반상품을 예탁하려는 자는 제50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상품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59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제56조제3항의 예탁자계좌부와 제57조 제1항의 거래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일반상품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예탁자계좌부 또는 거래투자자계좌부에 일반상품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일반상품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일반상품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거래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0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와 그의 거래투자자는 각각 제56조제3항의 예탁자계좌부와 제57조제1항의 거래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일반상품의 종류·종목 및 수량 등에 따라 예탁일반상품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거래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기관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일반상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일반상품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예탁결제기관은 예탁자의 파산·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탁일반상품 중 거래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실물사업자 보호, 조세포탈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투자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는 예탁결제기관으로 하여금 반환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1조(예탁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탁결제기관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예탁결제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예탁결제기관과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기관과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82조와 제91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6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일반상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일반상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일반상품 및 그 상장일반상품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신 납부하는 상장일반상품이 제56조제3항의 예탁일반상품인 경우에는 예탁결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그 상장일반상품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예탁결제기관 또는 예탁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그 발행일부터 그 예탁증명서를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상장일반상품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계좌부 또는 거래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보전의무) ① 예탁결제기관 및 예탁자는 예탁일반상품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기관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탁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보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소멸한다.

제64조(생산·수입 내역의 통지) 예탁대상일반상품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새로 일반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그 일반상품의 종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준용규정) 제15조, 제49조, 자본시장법 제317조, 같은 법 제321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기관에 준용한다.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제6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일반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일반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일반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일반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일반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

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일반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일반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업무상 취득정보의 이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반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상장일반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장일반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상장일반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자
3. 상장일반상품의 중개·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69조(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66조 또는 제6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일반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66조 또는 제6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0조(일반상품거래의 제한 및 보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상품업자 또는 위탁자가 일반상품과 관련된 일반상품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일반상품업자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거래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점매석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과도한 수량의 거래가 행하여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일반상품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장일반상품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반상품에 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을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반상품에 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위탁주문을 한 일반상품업자를 경유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량, 수량의 산출방법, 제2항의 보고 사항 및 보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상품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일반상품의 매도

2. 차입한 일반상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상품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일반상품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2조(대량거래에 대한 일반상품시장의 이용의무) ① 일정규모이상의 상장일반상품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이를 위탁 받은 때에는 일반상품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일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국일반상품협회

제7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거래투자자를 보호하며 일반상품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일반상품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일반상품업자, 그 밖에 일반상품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일반상품협회", "대한일반상품협회", "일반상품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회는 일반상품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일반상품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거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3. 일반상품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4. 일반상품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일반상품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5. 일반상품업 관련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6.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일반상품업 관련 연수업무
8.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5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준용규정) 제15조 및 자본시장법 제24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제77조(협회에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은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협회와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와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82조와 제91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78조(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상품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반상품업자, 거래소, 예탁결제기관 등에 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로 일반상품업자, 거래소 또는 예탁결제기관 등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일반상품시장과 자본시장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 간에 연계된 거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제79조(보고사항 등) ① 일반상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때
2. 일반상품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때
3. 일반상품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때
4. 상호를 변경한 때
5.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6.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7.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8.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9.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0. 그 밖에 거래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일반상품업자에 대한 검사) ① 일반상품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예탁결제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1조(일반상품업자에 대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상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일반상품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상품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정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거래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일반상품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상품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상품업자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 또는 면직의 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임원에 한한다) 또는 정직(직원에 한한다)
3. 감봉(직원에 한한다)
4. 견책(직원에 한한다)
5. 경고(임원의 경우에는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를 말한다)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상품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4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이의신청) ① 제81조제1항, 제2항,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4항(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3조(보고 및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래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66조, 제67조, 제71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업자, 일반상품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84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6조 제67조, 제71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일반상품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상품업자에 대하여 제81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같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부과기준, 분할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결손처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자본시장법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435조, 같은 법 제436조, 같은 법 제437조, 같은 법 제4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상품업자”로,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일반상품”으로 금융투자업은 “일반상품업”으로 본다.

제7장 보 칙

- 제87조(일반상품거래정보관리 등) ① 거래소는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내역을 지식경제부장관, 국세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예탁결제기관은 일반상품에 대한 예탁보관내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시장 밖에서 행한 매매내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보고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일반상품매매의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일반상품매매업자 또는 일반상품중개업자가 일반상품시장에서 일반상품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일반상품업자”로, 금융거래는 “일반상품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금융자산은 “상장일반상품”으로 본다.

제89조(일반상품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물사업자에게 일반상품의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상품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관세·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0조(권한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품질인증기관, 협회, 검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1항에 의한 일반상품업자의 지정 취소
2. 제8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일반상품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8장 벌 칙

제9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일반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일반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일반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4.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9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일반상품업자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상품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일반상품업자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3. 제65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거래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일반상품의 매매를 한 자
5. 제19조(제3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상품의 매매거래를 한 자
7. 제81조제1항에 따라 일반상품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일반상품업을 영위하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위를 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제65조 또는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6. 제16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9.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0.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1.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좌간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2. 제6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3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불응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투자광고를 한 자
2. 제17조, 제36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일반상품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매매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예탁결제기관에 지체 없이 예탁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3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거래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9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2조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9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래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5. 제22조를 위반하여 거래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 또는 제73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65조(자본시장법 제321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80조제1항(제77조,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71조를 위반하여 상장일반상품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지정, 모범, 우수 등의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4. 제52조제2항 또는 제53조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않거나 품질인증이 취소된 일반상품에 대해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한 자
 5.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6.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상품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생산·수입내역의 통지)를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9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80조제2항(제61조,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12. 제87조를 위반하여 매매내역 또는 예탁보관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명칭 또는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반상품거래소의 의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관 중에 일반상품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는 일반상품시장 중 금시장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른 별도의 거래소 설립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 일반상품시장 중 금시장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른 일반상품거래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된 거래소는 지정될 당시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직 등에 관하여 제31조 각 항의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본시장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3조에 따른 별도의 시장감시위원회 구성이 없는 경우 일반상품시장 중 금시장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로 본다.

④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상품시장 중

금시장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별도의 예탁결제기관 설립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 일반상품시장 중 금시장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예탁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31조의 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일반상품거래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 당시 일반상품거래소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일반상품거래소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일반상품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일반상품거래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